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니므로 직업병 진단을 위해 현실적으로 4일 이상 진단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2. 질의 3에 대하여 : 직업병 진단을 위해 최초진단서 발급일 이후 요양이 결정될 때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월차유급 휴가계를 내고 직업병 진단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는 노동 관계법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동 진단일에 대하여 무급처리 하였다고 산재보험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Q 2002년 12월 23일 00중공업 소속 근로자 지00 의 3명이 사업주의 허가 없이 월차 또는 병가의 이유로 W 병원에서 진료 후 2003년 1월 7일 지사에 2003년 1월 7일부터 4주에 대한 요양신청하여 2003년 1월 16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하였으며 현재 요양중인 바, 이태 사항에 대해 질의한다.

(직업병 최초 진단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여부  
 2. 병원 내원 후 4일 이상 진찰하여 직업병이 진단된 경우 재해발생일(직업병 최초 진단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여부  
 3. 진단일로부터 계속해서 요양중인 경우 재해발생일(직업병 최초 진단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여부

1.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요양을 개시하여 상정기간(4일 이상)요양한 경우 재해발생일

A 1. 질의사항 1 및 2에 대하여 : 요양과 진단은 별개의 것이 아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한방에서 보면 어혈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울혈증이나 어혈증이 있는 사람으로 변비가 잦은 사람에게 걸리기 쉽고 장시간 서서보는 업무나 앉아서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 설사, 운동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유전, 여성의 출산 등이 원인이 된다. 이밖에 매운맛이 강한 고추나 생강 카레를 이용한 음식이나 어혈을 만들기 쉬운 어란류·새우·게·오징어·고등어·피조개·죽순·고사리·참살·초콜릿·코코아·담배·알코올·담뱃·육류의 과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을엔 치질에 대한 경보령을 내릴만하다. 치질과 계절이 무슨 관계냐고 의아해했지만, 오월설에 따르면 가을은 오장육부 중 폐(肺)가 관장하며, 폐는 대장(大腸)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 함문은 넓게 보면 대장의 한 부분이며 대장은 폐와 표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을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다.

☞의정부수한방병원(031-820-7200)

참추고 싶은 비밀의 정체, 치질 ①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었다니 한 20대 여성취직자의 재미있는 사연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치질. 수술을 해야 했지만 사회적 위치와 체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었지만 결국엔 직장엔 다른 핑계를 대고 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병원 복도에 웬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가 싶더니 다름 아닌 사무실 인기 1위에 자신 또한 흡모하던 대리님이 아닌가. 알고 보니 대리님도 차마 말

못할(?) 그 병으로 수술하러 왔더라나. 그녀는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회복실에서 생각해 보니 그 잘생긴 대리님도 영덩이를 하느라 한 묘한 포즈로 있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와 견딜 수가 없었다. 나중에 대리님도 수술실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키득거리다 의사선생님께 계속 야단을 맞았다.

병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겉으로 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 짙고, 웬지 숨기고 싶은 병이 바로 치질이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만 옆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질은 내발 달린 짐승에게는 없고 무게가 아래로만 물리는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3내과장 **양동훈**



바로 놓지 않는 것이 좋다. 담배를 끊고, 비만한 경우는 체중을 줄이고, 복압을 높일 수 있는 몸에 조이는 내의나 속옷의 착용을 피하는 것이 위식도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취침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고, 지방식을 줄이고, 과식을 피하며, 초콜릿, 술, 커피, 박하, 탄산음료의 섭취를 피하는 것도 위식도 역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와 제산제를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1차 치료로 많이 시행되었으나, 현재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보다 강력한 위산분비억제제인 Proton pump inhibitor를 초기 치료에 사용한다.

장기 치료는 진단 당시 식도염의 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증상의 재발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장기간의 약물 요법에도 반응이 없거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포천병원 (031-539-9114)

위식도 역류질환 ②

위식도 역류의 진단을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히 시행되는 검사는 내시경 검사이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도 식도 점막의 손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위나 십이지장 등 다른 상부 위장관의 이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도조영술은 내시경에 비해 예민하나 특이도가 떨어지므로 1차 검사로는 부적합하며, 24시간 식도산도검사는 위식도 역류가 실제로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검사법이나, 전형적인 역류에 의한 증상이 있고 내시경 검사에

서 역류성 식도염이 진단되면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의 용량을 줄이면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흔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식도 역류의 빈도나 정도를 낮추기 위한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Proton pump inhibitor로 일일억제하는 위산분비억제제를 이용한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초기 치료의 근간이며, 초기치료 후 증상 및 속도염이 개선되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사람은 잘 때 침대의 머리부분을 올리거나 배개를 높게 베고, 식후 2-3시간 이내에는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위하의 경우,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을 상대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난 경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

Q 저는 논 2필지를 매수하려 했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A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도농복

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 구, 읍, 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난 경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불안하면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애정이 결핍된 경우가 가장 많고, 과잉보호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어린 유아인 경우에도 고추를 만지거나 몸을 바닥에 부비면서 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적절할 뿐이 기구가 없다든지 집중할만한 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는 밖으로 나가 활동시키는 것과 적절한 놀이 기구를 주어서 지루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며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도록 때리거나 의식적으로 막으면 더 의식하게 되어 혼자 있을 때도 만지고, 자라서 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단순하게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문: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유아들의 성적행위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유아들의 성적행위에 대해 부딪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의 성적행동을 보고 많은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다. 어린이가 교실의 한쪽 구석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장난감 말을 타면서 발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사들은 알 수 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성적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인 경우에는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이나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르며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 어린이가 성적인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한 그림을 본다고 성충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유치원에서 여자친구의 치마를 들추는 행동이나 바지를 벗기는 행동을 하는 것은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으로 보아서는 평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성적행동을 정서적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서가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서 이월결산금을 공제한 잔액의 50%범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공제범위가 차감소득의 100%에서 50%로 대폭 축소되었으나, 2008년까지는 소득의 75%까지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및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의 인정한도액을 총소득금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에 10만원과 주면세 1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11만원이 더 돌려 받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은 2004년3월12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법인의 정치자금 손금산입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Q 법인회사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품을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이재민을 위한 구호용품 및 사립학교 등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에서 어떠한 지원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A '기부금'이란 본래 강제성이 없이 기업이나 개인이 임의로 지출하는 공품이라 할 수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정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제정하여 무분

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기부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공품 중 기업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중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하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공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용품,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산학협력단 등에 시설비 및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며 법인의 당해연도 소득에

#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2층 풍천민물장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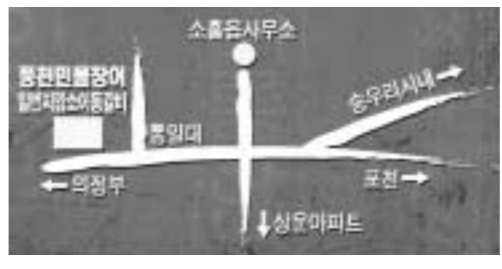
16년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고 있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최상급 이동갈비 사용으로 육질에서 당연 으뜸입니다.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250석 보유, 연중 예약 실시★  
★고객을 위한 차량 항상 대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